온실가스 배출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콘텐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하여 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제출 ③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차입 및 상쇄배출권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1
1. 온실가스 배출권 이해하기 4
1.1. 온실가스 배출권 4
1.1.1. 배출권거래제 4
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7
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7
2.1.1.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7
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8
2.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8
2.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11
2.2.3.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13
2.2.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16
2.2.5.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19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출 및 이월 등 21
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1
3.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법 21
3.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3
3.2.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및 이월 등 28
3.2.1.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28
3.2.2.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31

1. 온실가스 배출권 이해하기

1.1. 온실가스 배출권

1.1.1.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의 개념

"온실가스"란?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의 물질[삼불화질소(NF3)는 제외]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온실가스 배출"이란?

▪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

"배출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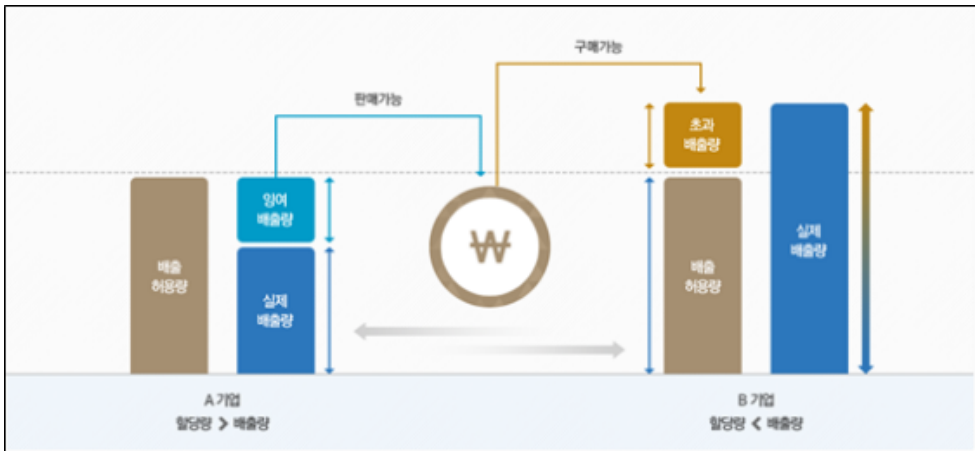
▪ "배출권"이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란?

▪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www.keco.or.kr)-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기후대기-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 출처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1/OPN01050401.jsp)>

자율적 감축과 비용 절감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www.keco.or.kr)-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기후대기-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www.keco.or.kr)-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기후대기-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운영 절차

▪ 배출권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배출권거래제 흐름도>



< 출처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2/OPN01050402.jsp)>

금융상·세제상 지원

지원내용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중소기업 우선 지원

▪ 정부는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 노력

▪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지정·설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정부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2.1.1.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만 해당)

2. 1.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3,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상일 것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동자료량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목표의 준수실적 및 명세서를 지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업장·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자발적 참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 √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의 사유

▪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해도 할당대상업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

권리·의무 승계 절차

▪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하는 조치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2.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항 전단).

※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부칙(법률 제11419호) 제2조제1항 참조].

계획기간	
1차 계획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차 계획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차 계획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차 계획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배출권 할당 기준

-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 할당대상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함)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 제품 생산량·용역량 또는 열·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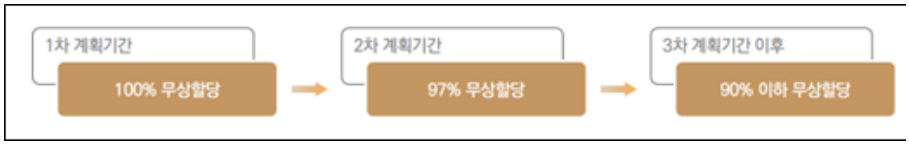
배출권의 무상할당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 배출권은 다음의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단서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차 계획기간 : 100% 무상할당
- 2차 계획기간 : 97% 무상할당
- 3차 계획기간 이후 : 90% 이하 무상할당

<계획기간에 따른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31쪽 >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10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로서 열의 공급량에 대해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설(4차 계획기간으로 한정)

배출권의 유상할당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

▪ 배출권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입찰 및 낙찰

▪ 유상할당 경매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공고 및 권리 이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 그 밖에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위한 자세한 경매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배출권 할당신청

할당신청서 등 제출

▪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소속 사업장 단위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8조).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제1호).

▪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측정·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및 할당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

배출권 할당량 결정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인정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 업체별 할당량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효율계수의 개발

▪ 배출효율계수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단위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효율계수를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

- 해당 사업장의 중간제품 생산량
- 해당 사업장의 원료 소비량
- 해당 사업장의 연료 소비량 또는 에너지 생산량
-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최적가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의 시설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1조제4항).

-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업체별 할당량 결정 및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음)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후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4항).

2.2.3.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배출권의 추가 할당

추가할당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신청)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청)

   ①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함)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4.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신청)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청)

   ①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함)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② 집단에너지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함)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③ 할당대상이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④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적용되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강화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함)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⑤ 할당대상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함)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⑥ 할당대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⑦ 할당대상이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직권에 따른 추가 할당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신청에 따른 추가 할당

추가 할당 신청

▪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7조).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추가할당을 신청하여 추가할당을 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제1호).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9조제1항).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및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2항·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4항).

> ※ 배출권 추가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배출권 취소 사유	취소 내용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로 취소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은 그 배출권 전부를 사업장 단위로 취소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②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③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6.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 위 2. 및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8항).

※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할당 취소사유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결정 및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9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0항).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사유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9조제1항).

할당 취소량 결정 및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2항·제3항).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이전

할당 취소량 이전의 방식

▪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2항).

배출권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제출

▪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3항).

2.2.5.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배출량 보고

배출량 보고

▪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배출시설·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시설·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시설·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사용·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에너지의 판매·구매 등 이동 정보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3호).

▪ 작성된 명세서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명세서의 확인 등

▪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제4항).

자료의 관리 및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주요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배출량 인증

배출량 인증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를 받으면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

▹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배출량 인증의 통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출 및 이월 등

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3.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법

배출권 거래의 준비

배출권 거래의 단위

▪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 위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배출권 거래의 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함)는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할당대상업체(「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2. 배출권시장 조성자(「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투자매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5.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6.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7. 은행 및 보험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8.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
9. 위 4.부터 8.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

▪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함)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위 4. 부터 9.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6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7항).

-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8항).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 등을 고려할 때 배출권 거래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면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권 거래의 신고

신고방법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그 사실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2호).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 위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위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
- 위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나 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 배출권을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 양도인 또인 양수인이 할당대상업체인지 여부
-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 다음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배출권 이전 및 취소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배출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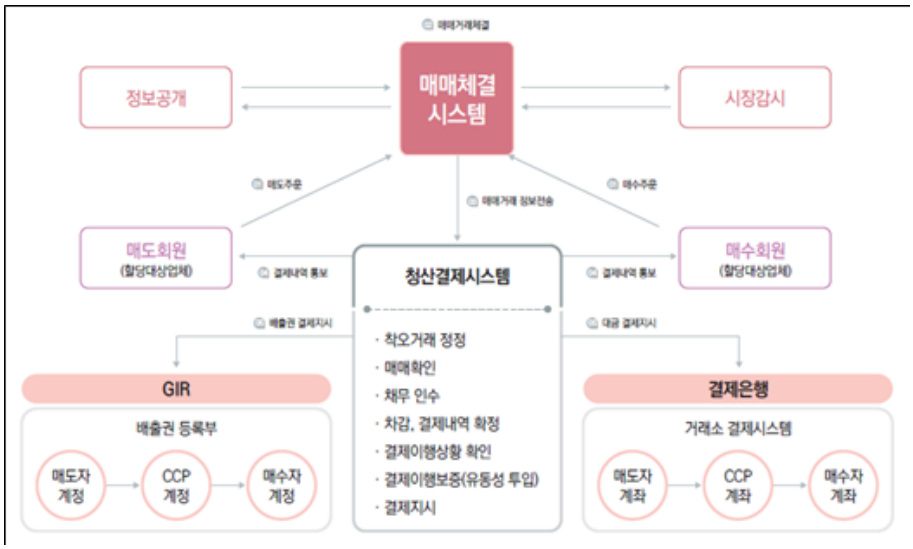
배출권 거래의의 효력 발생

▪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3.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시장 구조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7쪽 >

배출권 시장매매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합니다.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실시간 매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8쪽).

▪ 단일가 매매는 시가와 종가, 하나의 가격으로 모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8쪽).

-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호가를 접수하여 오전 10시에 단일가(시가)로 체결됩니다.
-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거래가 중지되고 호가를 접수받아 오후 12시 정각에 결정된 종가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 실시간 매매는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8쪽).

- 낮은 매도가격의 주문이 높은 매도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되고, 높은 매수가격의 주문이 낮은 매수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됩니다(가격 우선의 원칙).
- 같은 가격의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해서 체결됩니다(시간 우선의 원칙).

▪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업체의 예수금이 매도업체에 지급됩니다. 배출권은 매도업체의 배출권등록부에서 매수업체의 배출권등록부로 자동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8쪽).

배출권 장외매매

▪ 배출권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장외거래로 거래될 때에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9쪽).

▪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양도인의 배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9쪽).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 및 청산 결제
-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 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 감시
-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배출권의 일간 매매량 및 매매가격과 일간 최고 또는 최저 및 최종 매매가격 등 시세의 공표
-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시장 조성자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해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

배출권시장 조성자 업무

▪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 배출권의 거래

▪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매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배출권 시장 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보고한 실적을 평가하여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전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

▪ 시정요구를 받은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후단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

▪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배출권 매도 또는 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 정전·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업무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 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7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

-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
-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
-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8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0).

- 영업으로 인한 수익
-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배출권 시장 안정화

배출권 시장 안정화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이상인 경우
  - √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경매 보류 가격 이하인 경우
-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로서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의 3배 이상이거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 할당대상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 방법

▪ 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제6항).

▹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하는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함)의 100분의 150 이하

▹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7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의 방법은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8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9항).

3.2.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및 이월 등

3.2.1.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배출권 제출

제출대상 배출권

▪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0쪽).

▪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

-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 이를 위반하여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6호).

신고서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배출권등록부 등록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

배출권 제출 위반에 대한 과징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2/1,0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배출권 이월

배출권 이월 신청

▪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출권 이월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까지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배출권 차입

배출권 차입 사유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배출권 차입 한도

▪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배출권 차입 신청

▪ 배출권을 차입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출권 차입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까지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배출권 소멸

배출권 소멸

▪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3.2.2.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배출권 상쇄

배출권 상쇄제도

< 상쇄제도 개요 >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46쪽 >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부문별 관장기관이 외부사업 감축량을 인증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46쪽).

▪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보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상쇄제도라고 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46쪽).

외부사업의 절차

외부사업의 절차도

< 외부사업의 절차도 >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47쪽 >

전환 가능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7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관련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 부문별 관장기관은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4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5항·제6항).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제3호).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 이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

▪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6항·제7항).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전환

상쇄배출권 전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쇄배출권 전환신청을 받으면 위의 절차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상쇄배출권의 이용

▪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실적 자체를 매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보유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48쪽).

▸ 전환으로 발급받은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과 마찬가지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할당업체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48쪽).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

▪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

▪ 상쇄배출권 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